

# 양 천 구

우 158 470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2번지 / 전화 ( 02 ) 640 3405 / 전송 646 0546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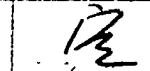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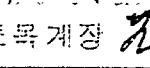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통보 30500 61

시행일자 1993.1.12

(경유)

수신 과 안 감 조

발주 3-6

취급		구 청 장
보존		
부구청장		주무과장승
건설국장		
토목과장		
기안	토목계장 	협조

제목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 계획 정정 인가

내부인



수신 : 내부 경 재

대역 : 관음

본 권의 20011 1790 180 17 08 30와 관련 우리과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사업(실정) 실시 계획인가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인가코져 합니다.

아 래

비	정
<p>1. 사업내역</p> <p>가. 사업명 : 신원광장내 부도설치 공사</p> <p>나. 규 모 : 부도설치 □ 570M.A 340</p> <p>다. 사업기간 : 인가일로부터 2년간</p> <p>라. 인가일자 : 양천구청장 /</p> <p>마. 인가처 : 수용별 토지조서 : 변경</p>	<p>1. 사업내역</p> <p>작동</p> <p>2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/</p> <p>3. 사용 또는 수용별 토지조서 : 공중 소유 세부 명세 추가</p>

심사	93. 1. 11	제 4 호
담당자	법제국장	기획예산과장
		

(제 2 인)

고 시 (인)

서울시고시제 1993- / 호

도시계획사업(광장) 실시 계획인가

1. 건설부고시제 137호 ('77.7.9)로 도시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47호 ('77.7.20)로 시작 승인되어 양천구 공고 제92 89호 ('92.9.15)로 도시계획사업(광장) 실시계획, 공람공고하고 양천구고시 제92 31호 ('92.9.29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신원광장 내 부도설치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부서는 양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의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린다.

1993. 1.

서울특별시 장 :

-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신원동 217, 410주변 신원광장
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광장내 부도설치공사
- 다. 사업규모 : 부도설치 H 6M, L 570M, A-34a
- 라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'92.10 ~ '94.10.
- 마. 관계부면 : 법제(성략)
- 바. 서울 도시 수용권 토지조사 : 별첨
- 나.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: 별첨

(제 3 인)

인 가 증 (안)

도시계획사업(광장) 실시 계획 인가

양천구 공고 제 92-89('92.9.15)로 도시계획사업(광장) 실시계획 공람공고하고 양천구  
고시 제 92-31호('92.9.29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신월광장내 부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 
도시계획법 제25조,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변경 실시계획 인가합니다.

1993. 1.

서 울 특 별 시 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신월동 21, 419주변 신월광장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월광장내 부도설치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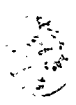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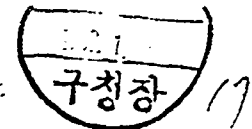
다. 사업의 규모 : 부도설치 B 6M, L 570M, A=34a

라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'92.10. ~ '94.10.

마. 관계도면 : 별첨 (생략)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: 별첨

사.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,성명 : 별첨



문.

(제 4 인)

수신 : 서울특별시

제목 : 시범 개재 의뢰

1.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(광장)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5조,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범개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안 1부. 끝.

(제 5 인)

경유 : 서울특별시 (건설행정과장)

수신 : 건설부장관

참조 : 도로시설계획과장

제목 : 도시계획사업(광장) 실시계획 변경 인가 보고

1. 도록 30500 1829( '92.9.30)호와 관련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신월광장내 부도설치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당초 양천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 인가되었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변경고시안 1부. 끝.

(제 6 인)

수신 : 서울특별시장

참조 :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, 도시개발과장

제목 :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보고

1. 도록 30500 1829( '92.9.30)호와 관련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신월광장내 부도설치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당초 양천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 인가 되었기 보고합니다.

첨부 : 변경고시안 1부. 끝.

(제 7 인)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도시계획사업(도로) 실시계획인가 통보

1. 도록 30500 1829( '92.9.30)호와 관련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사업(광장) 신월광장내 부도설치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당초 양천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 인가 되었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정정 고시문 1부. 끝.

(제 8 안)

수신 : 서울특별시

참조 : 시민과장

제목 : 시장 관인 날인 의뢰

1.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도시계획사업(광장) 신원광장내 부도 설치공사의 당초 사업자가 양천구청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되었기에 변경 고시에 따른 시장 관인 날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, 인가증 각 1부.



양 천 구 청 장

